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광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77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5.

발 의 자 : 이광재 · 한준호 · 송기현
박지원 · 어기구 · 조승래
김용만 · 김영환 · 신정훈
조인철 · 박용갑 · 임호선
전용기 · 최기상 · 백혜련
황 회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방송프로그램, 영화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과 이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.

그러나 게임, 음악 및 출판 콘텐츠는 영상콘텐츠와 함께 문화산업의 주요 분야를 구성하고 있고 다른 콘텐츠의 원천으로도 활용되고 있음에도 현행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, 콘텐츠 분야 간 지원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안정적인 제작·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. 특히 출판업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적용대상과 감면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출판콘텐츠 제작 현장의 체감도가 낮은 상황임.

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, 게임 및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, 이들 문화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

사에 대한 출자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문화콘텐츠의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25조의 6 및 제25조의7).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6의 제목 중 “영상콘텐츠”를 “문화콘텐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상콘텐츠”를 각각 “문화콘텐츠”로, “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”를 “「소비자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”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영상콘텐츠”를 “문화콘텐츠”로 하고, 같은 호에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2호가목·나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“영상콘텐츠”를 각각 “문화콘텐츠”로 한다.

다만, 해당 문화콘텐츠가 소비자에게 처음 제공된 이후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 제작되는 경우에는 제작비용이 발생한 각 과세연도에 제2호가목에 따른 기본공제를 적용하고, 총 제작비용이 확정되는 과세연도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추가공제를 적용한다

라.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. 다만,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외국간행물, 「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

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습용 간행물은 제외한다.

마.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

바.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,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음악파일,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음악영상물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음악영상파일

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상콘텐츠”를 각각 “문화콘텐츠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영상콘텐츠”를 “문화콘텐츠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문화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25조의 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문화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2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의6(<u>영상콘텐츠</u> 제작비용 에 대한 세액공제) ①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8 년 12월 31일까지 제1호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<u>영 상콘텐츠</u> (이하 이 조에서 “ <u>영 상콘텐츠</u> ”라 한다)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 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용(이하 이 조에서 “ <u>영상콘텐 츠 제작비용</u> ”이라 한다)이 있 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 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<u>영상콘텐츠</u> 가 처음으로 <u>방송되 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 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 하여 시청에</u> 제공된 과세연도 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 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 에서 공제한다. <단서 신설>	제25조의6(<u>문화콘텐츠</u> 제작비용 에 대한 세액공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문화</u> <u>콘텐츠</u> ----- <u>문화</u> <u>콘텐츠</u> ----- ----- ----- <u>문화콘텐츠</u> ----- ----- ----- <u>문화</u> <u>콘텐츠</u> -----「 <u>소비자기 본법</u> 」 제2조제1호에 따른 <u>소 비자에게</u> ----- ----- ----- <u>다만, 해당 문화콘텐 츠가 소비자에게 처음 제공된</u>

1. 공제대상 영상콘텐츠

가. ~ 다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이후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바에 따라 계속 제작되는 경우
에는 제작비용이 발생한 각 과
세연도에 제2호가목에 따른 기
본공제를 적용하고, 총 제작비
용이 확정되는 과세연도에 같
은 호 나목에 따른 추가공제를
적용한다.

1. -----문화콘텐츠
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
라.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

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
물. 다만, 같은 조 제5호에
따른 외국간행물, 「잡지
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
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
따른 정기간행물 및 대통
령령으로 정하는 학습용
간행물은 제외한다.

마.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
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
게임물

바.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
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
음반, 같은 조 제5호에 따
른 음악파일, 같은 조 제6

	호에 따른 음악영상물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음 악영상파일
2. 공제금액	2. -----
가. 기본공제 금액: 해당 영 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 분의 10(중소기업의 경우 에는 100분의 15)에 상당 하는 금액	가. -----문 화콘텐츠----- ----- ----- -----
나. 추가공제 금액: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 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 는 영상콘텐츠의 경우 그 제작비용의 100분의 10(중 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 의 15)에 상당하는 금액	나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문화콘텐츠----- ----- ----- -----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영상콘 텐츠의 범위, 제작비용의 계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③ -----문화콘 텐츠----- ----- -----.
제25조의7(내국법인의 문화산업 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 액공제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	제25조의7(내국법인의 문화산업 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 액공제) ① -----

는 내국법인이 제25조의6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<u>영상콘텐츠</u>(이하 이 조에서 “<u>영상콘텐츠</u>”라 한다)를 제작하는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(이하 이 조에서 “문화산업전문회사”라 한다)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는 경우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<u>영상콘텐츠</u>의 최초 방송·상영 또는 제공일과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1. (생략) 2. 해당 <u>영상콘텐츠</u>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총 출자금액으로 나눈 비율 ② · ③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<u>문화콘텐츠</u>----- -----<u>문화콘텐츠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문화콘텐츠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<u>문화콘텐츠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---	--